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0. 1. .

법제처 심사 전

법무부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법무부에 차세대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감찰 업무 전문화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노사업무 전담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 중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관리과 및 조사과를, 진주·포항·순천·목포교도소에 분류심사과를 신설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에 1:1 보호관찰·전자감독, 대체복무제도 운영, 보호 외국인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등 242명(5급 1명, 6급 44명, 7급 84명, 8급 72명, 9급 39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을 증원하고, 증원되는 인력 중 201명(6급 39명, 7급 65명, 8급 60명, 9급 37명)을 평가 대상 인력으로 추가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체험연수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에서 담당하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 명령 관련 업무를 여성아동인권과장의 분장사무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4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
에 관한 사항

제19조제2항 중 “일반정신과·사회정신과·특수치료과·감정과·신경과·일반진료과·간호”를 “일반정신과·사회정신과·정신재활치료과·감정과·신경과·일반진료과·간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치료과장”을 “정신재활치료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활치료
2. 작업치료
3. 정신재활치료 관련 진료·조사·연구

제27조제12항제6호의3 중 “제24호차목”을 “제24호차목(그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 단서 중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이민특수조사대장을 두는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사범과장을 두지 않는 출입국·외국인청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한다.

제33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6명(8급 6명)”을 “5명(8급 5명)”

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5급 14명)”을 “(4급 또는 5급 2명, 5급 12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5명),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출입국관리직 1명(8급 1명)”을 “5명)”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교도소 및 구치소에 두는 부서의 명칭(제16조 관련)

명 칭	부 서
경북북부제2교도소	총무과, 보안과, 사회복지과, 복지과, 의료과
천안개방교도소·경북직업훈련교도소·원주교도소·안동교도소·공주교도소·경북북부제3교도소·홍성교도소·경주교도소·강릉교도소·장흥교도소·영월교도소·해남교도소·상주교도소·정읍교도소·강원북부교도소	총무과, 보안과, 직업훈련과, 사회복지과, 복지과, 의료과
화성직업훈련교도소·포항교도소·춘천교도소·청주교도소	총무과, 보안과, 출정과, 분류심사과, 직업훈련과, 사회복지과, 복지과, 의료과
대전교도소·대구교도소·광주교도소·전주교도소·창원교도소	총무과, 보안과, 출정과, 분류심사과, 직업훈련과, 민원과, 사회복지과, 복지과, 의료과
의정부교도소	총무과, 보안과, 출정과, 분류심사과, 직업훈련과, 민원과, 사회복지과, 복지과, 의료과, 심리치료과
여주교도소·부산교도소·순천교도소·서울남부교도소·목포교도소·청주여자교도소·김천소년교도소·	총무과, 보안과, 분류심사과, 직업훈련과, 사회복지과, 복지과, 의료과
진주교도소·군산교도소	총무과, 보안과, 분류심사과, 직업훈련과, 사회복지과, 복지과, 의료과, 심리치료과
천안교도소	총무과, 보안과, 분류심사과, 직업훈련과, 사회복지과, 복지과, 의료과, 국제협력과, 심리치료과
안양교도소	총무과, 보안과, 출정과, 분류심사과, 직업훈련과, 민원과, 사회복지과, 복지과, 의료과, 시설과, 심리치료과
경북북부제1교도소	총무과, 보안과, 분류심사과, 직업훈련과, 사회복지과, 복지과, 의료과, 시설과
제주교도소	총무과, 보안과, 출정과, 직업훈련과, 사회복지과, 복지과, 의료과
통영구치소·밀양구치소	총무과, 보안과, 수용기록과, 사회복지과, 복지과, 의료과
충주구치소	총무과, 보안과, 출정과, 수용기록과, 사회복지과, 복지과, 의료과
울산구치소	총무과, 보안과, 출정과, 수용기록과, 민원과, 사회복지과, 복지과, 의료과
부산구치소·수원구치소·서울동부구치소·인천구치소·대구구치소	총무과, 보안과, 출정과, 분류심사과, 수용기록과, 민원과, 사회복지과, 복지과, 의료과
서울구치소·서울남부구치소	총무과, 보안과, 출정과, 분류심사과, 수용기록과, 민원과, 사회복지과, 복지과, 의료과, 시설과

별표 4의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의 관할구역란 중 “김해시·밀양시·양산시”를 “양산시”로 한다.

별표 4의2의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아래에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 조사과
--------------	----------

별표 5 중 총계 “752”를 “757”로 하고, 일반직 계 “721”을 “726”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 25 다음에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를 신설하고, 검찰주사 “34”를 “35”로 하며, 행정주사 “2”를 “3”으로 하고, 검찰주사보 “10”을 “11”로 하며, 행정주사보 또는 검찰주사보 14 다음에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를 신설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752”를 “757”로 하고, 일반직 계 “721”을 “726”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 25 다음에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를 신설하고, 검찰주사 “34”를 “35”로 하며, 행정주사 “2”를 “3”으로 하고, 검찰주사보 “10”을 “11”로 하며, 행정주사보 또는 검찰주사보 14 다음에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를 신설한다.

별표 7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6,338”을 각각 “16,369”로 하고, 간호주사 “23”을 “27”로 하며, 교위 “1,782”를 “1,788”로 하고, 식품위생주사보 “29”를 “32”로 하며, 간호주사보 “38”을 “44”로 하고, 식품위생서기 “18”을 “20”으로 하며, 간호서기 “51”을 “59”로 하고, 식품위생서기보 “14”를 “16”으로 한다.

별표 9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974”를 각각 “982”로 하고, 기술서기관 9 다음에 “기술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 1”를 신설하며, 기술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 1 다음에 “기술서기관·보호사무관 또는 의무사무관 1”를

신설하고, 의무사무관 “13”을 “12”로 하며, 보호사무관 또는 의무사무관 “2”를 “1”로 하고, 간호주사 “3”을 “4”로 하며, 간호주사보 “12”를 “15”로 하고, 간호주사보 15 다음에 “약무주사보 1”를 신설하며, 방호서기 1 다음에 “의료기술서기 1”를 신설하고, 전문경력관 나군(특수교육 담당) “1”을 “3”으로 한다.

별표 10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5”를 각각 “42”로 하고, 보호주사보 “12”를 “14”로 하며, 보호주사보 14 다음에 “보호서기 5”를 신설한다.

별표 11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732”를 각각 “1,913”으로 하고, 보호주사 “281”을 “317”로 하며, 보호주사보 “376”을 “434”로 하고, 보호서기 “391”을 “443”으로 하며, 보호서기보 “365”를 “400”으로 한다.

별표 1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551”을 각각 “2,566”으로 하고, 출입국관리사무관 “99”를 “100”으로 하며, 출입국관리주사 “430”을 “433”으로 하고, 출입국관리주사보 “686”을 “691”로 하며, 출입국관리서기 “682”를 “686”으로 하고, 출입국관리서기보 “507”을 “509”로 한다.

별표 12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551”을 각각 “2,566”으로 하고, 출입국관리사무관 “111”을 “112”로 하며, 출입국관리주사 “418”을 “421”로 하고, 출입국관리주사보 “686”을 “691”로 하며, 출입국관리서기 “682”를 “686”으로 하고, 출입국관리서기보 “507”을 “509”로 한다.

별표 1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무부 소속기관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체류외국인 관리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90명 (6급 18명, 7급 28명, 8급 24명, 9급 20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2)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62명 (6급 11명, 7급 14명, 8급 16명, 9급 21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3) 소년수용자 관리(소년원)	47명 (6급 4명, 7급 6명, 8급 10명, 9급 14명, 전문경력관 나군 13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4) 출입국사범 관리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 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35명 (6급 4명, 7급 9명, 8급 12명, 9급 10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5)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보호관찰소)	37명 (6급 4명, 7급 5명, 8급 12명, 9급 16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6) 야간 교대근무 (교도소 및 구치소)	67명 (6급 4명, 7급 6명, 8급 28명, 9급 29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7) 난민심사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16명 (5급 1명, 6급 5명, 7급 10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8) 체류외국인 민원 처리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32명 (6급 4명, 7급 6명, 8급 10명, 9급 12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9)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보호관찰소)	52명 (6급 10명, 7급 14명, 8급 14명, 9급 14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10) 소년수용자 관리(소년원)	42명 (6급 6명, 7급 12명, 8급 13명, 9급 11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11) 야간 교대근무 (교도소 및 구치소)	89명 (6급 9명, 7급 11명, 8급 33명, 9급 36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12) 출입국사범 관리(출입국·외 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 무소)	29명 (6급 4명, 7급 10명, 8급 9명, 9급 6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13)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50명 (6급 19명, 7급 11명, 8 급 8명, 9급 12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14) 항만 국경관리(출입국·외국 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 소)	33명 (6급 11명, 7급 11명, 8 급 6명, 9급 5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15)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보호관 찰소)	101명 (6급 19명, 7급 33명, 8 급 32명, 9급 17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16) 전자보석 결정전조사 등(보호 관찰소 및 보호관찰심사위원 회)	53명 (6급 10명, 7급 18명, 8 급 16명, 9급 9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17)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보호관찰소)	34명 (6급 7명, 7급 9명, 8급 9명, 9급 9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18)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13명 (6급 3명, 7급 5명, 8급 3명, 9급 2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인권국) ① ~ ③ (생략)	제7조의2(인권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인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 6의2. (생략)	1. ~ 6의2. (현행과 같음)
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u>시정명령에 관한 사항</u>	<삭 제>
7의2. 삭 제	
8. ~ 15. (생략)	8. ~ 15. (현행과 같음)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⑦ 여성아동인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u>시정명령에 관한 사항</u>
제19조(의료부) ① (생략)	제19조(의료부) ① (현행과 같음)
②의료부에 <u>일반정신과·사회정신과·특수치료과·감정과·신경과·일반진료과·간호과</u> 및 약제과를 둔다.	② ----- <u>일반정신과·사회정신과·정신재활치료과·감정과·신경과·일반진료과·간호</u>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u>특수치료과</u> 장은 다음 사항을	⑥ <u>정신재활치료과</u> 장-----

분장한다.

1. 물리치료 및 조사·연구

2. 작업요법에 의한 치료 및 조
사·연구

<신 설>

⑦ ~ ⑪ (생 략)

제27조(출입국·외국인청 등) ①
~ ⑪ (생 략)

⑫ 심사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6의2. (생 략)

6의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4호차목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인의 외국인 등록, 각종 체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6의4·7. (생 략)

⑬·⑭ (생 략)

⑮ 조사과장은 제9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조사과장은 제9항제8호의 사
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하고, 인
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부산
출입국·외국인청, 제주출입국

-----.

1. 재활치료

2. 작업치료

3. 정신재활치료 관련 진료·조
사·연구

⑦ ~ ⑪ (현행과 같음)

제27조(출입국·외국인청 등)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
-----.

1. ~ 6의2. (현행과 같음)

6의3. -----
----- 제24호차목(그 배우
자 및 자녀를 포함한다)-----

6의4·7. (현행과 같음)

⑬·⑭ (현행과 같음)

⑮ -----
-----.
--- 이민특수조사대장을 두는
출입국·외국인청-----
----- 사
범과장을 두지 않는 출입국·외
국인청과 출입국·외국인사무

· 외국인청, 대구출입국·외국
인사무소 및 대전출입국·외국
인사무소의 조사과장은 제9항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
을 추가 분장한다.

⑯ ~ (생략)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⑧ (생략)

⑨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다음 각 호의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의 공무원 정원 중 6
명(8급 6명)을 임기제공무원으
로 임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임
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1. ~ 3. (생략)

4.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전문
경력관 나군(직업훈련 담당) 8
명, 의무직 14명(5급 14명), 보
호직 4명(8급 4명)

5.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

소-----

-----.

⑯ ~ (현행과 같음)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

-----.
----- 5
명(8급 5명)-----

-----.

1. ~ 3. (현행과 같음)

4. -----

------(4급 또는 5급
2명, 5급 12명)-----

5. -----

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출입국관리직 2명(6급 또는 7급 2명), 의무직 3명(5급 3명),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출입국관리직 5명(8급 5명),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출입국관리직 1명(8급 1명)	----- ----- ----- ----- ----- ----- 5명)
6. (생략)	6.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5]

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u>752</u>	.	<u>757</u>	+5	
일반직 계	.		<u>721</u>	.	<u>726</u>	+5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		<신 설>	.	<u>1</u>	+1	
검찰주사	.		<u>34</u>	.	<u>35</u>	+1	
행정주사	.		<u>2</u>	.	<u>3</u>	+1	
검찰주사보	.		<u>10</u>	.	<u>11</u>	+1	

•	•	•	
<u>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u>	<u><신 설></u>	<u>1</u>	+1
•	•	•	
•	•	•	

[별표 5의2]

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752</u>		<u>757</u>	+5	
	.		.		.		
	.		.		.		
일반직 계			<u>721</u>		<u>726</u>	+5	
	.		.		.		
	.		.		.		
<u>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u>			<u><신 설></u>		<u>1</u>	+1	
	.		.		.		
	.		.		.		
검찰주사			<u>34</u>		<u>35</u>	+1	
	.		.		.		
	.		.		.		
행정주사			<u>2</u>		<u>3</u>	+1	
	.		.		.		
	.		.		.		
검찰주사보			<u>10</u>		<u>11</u>	+1	
	.		.		.		
	.		.		.		

<u>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u>	<u><신 설></u>	<u>1</u>	+1
•	•	•	
•	•	•	

[별표 7]

지방교정청등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2항 및 제33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6,338</u>	<u>16,369</u>	+31
일반직 계	<u>16,338</u>	<u>16,369</u>	+31
간호주사	<u>23</u>	<u>27</u>	+4
교위	<u>1,782</u>	<u>1,788</u>	+6
식품위생주사보	<u>29</u>	<u>32</u>	+3
간호주사보	<u>38</u>	<u>44</u>	+6
식품위생서기	<u>18</u>	<u>20</u>	+2
간호서기	<u>51</u>	<u>59</u>	+8

•	•	•	
•	•	•	
식품위생서기보	<u>14</u>	<u>16</u>	+2
•	•	•	
•	•	•	

[별표 9]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5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974</u>	<u>982</u>	+8
일반직 계	<u>974</u>	<u>982</u>	+8
•	•	•	
•	•	•	
<u>기술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u>	<u><신 설></u>	<u>1</u>	+1
<u>기술서기관 · 보호사무관</u> <u>또는 의무사무관</u>	<u><신 설></u>	<u>1</u>	+1
•	•	•	
•	•	•	
의무사무관	<u>13</u>	<u>12</u>	-1
보호사무관 또는 의무사무관	<u>2</u>	<u>1</u>	-1
•	•	•	
•	•	•	
간호주사	<u>3</u>	<u>4</u>	+1
•	•	•	
•	•	•	
간호주사보	<u>12</u>	<u>15</u>	+3
<u>약무주사보</u>	<u><신 설></u>	<u>1</u>	+1

· · <u>의료기술서기</u> · ·	· · <u><신 설></u> · ·	· · <u>1</u> · ·	+1
전문경력관 나군 (특수교육 담당)	<u>1</u>	<u>3</u>	+2

[별표 10]

보호관찰심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6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35	42	+7
일반직 계	35	42	+7
보호주사보	12	14	+2
보호서기	<신 설>	5	+5

[별표 11]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7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1,732</u>	<u>1,913</u>	+181
일반직 계	<u>1,732</u>	<u>1,913</u>	+181
•	•	•	
•	•	•	
보호주사	<u>281</u>	<u>317</u>	+36
•	•	•	
보호주사보	<u>376</u>	<u>434</u>	+58
•	•	•	
보호서기	<u>391</u>	<u>443</u>	+52
•	•	•	
•	•	•	
보호서기보	<u>365</u>	<u>400</u>	+35
•	•	•	
•	•	•	

[별표 12]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8항 본문 및 제33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	정	안	증	감
		•		•		•			
총	계			<u>2,551</u>		<u>2,566</u>		+15	
일	반	직	계		<u>2,551</u>		<u>2,566</u>	+15	
		•		•		•			
		•		•		•			
출	입	국	관	리	사	무	관	+1	
		•		•		•			
		•		•		•			
출	입	국	관	리	주	사		+3	
		•		•		•			
		•		•		•			
출	입	국	관	리	주	사	보	+5	
		•		•		•			
		•		•		•			
출	입	국	관	리	서	기		+4	
		•		•		•			
		•		•		•			
출	입	국	관	리	서	기	보	+2	
		•		•		•			
		•		•		•			

	.	.	.	
	.	.	.	

[별표 12의2]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8항 단서 및 제33조의2 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	정	안	증	감
		.		.		.			
총	계			<u>2,551</u>		<u>2,566</u>		+15	
일	반	직	계		<u>2,551</u>		<u>2,566</u>	+15	
		.		.		.			
		.		.		.			
출	입	국	관	리	사	무	관	+1	
		.		.		.			
		.		.		.			
출	입	국	관	리	주	사		+3	
		.		.		.			
		.		.		.			
출	입	국	관	리	주	사	보	+5	
		.		.		.			
		.		.		.			
출	입	국	관	리	서	기		+4	
		.		.		.			
		.		.		.			
출	입	국	관	리	서	기	보	+2	
		.		.		.			

•	•	•	
•	•	•	